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의안
번호

2724

아이수루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비례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최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민간정원 확대 및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, 이를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대한 정원진흥실시계획에 있어 민간정원 활성화는 물론,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교류,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☐ 이에 안 제7조의 경우,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있어, 국제교류, 협력 및 민간정원 활성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- ☐ 또한, 안 제10조의 경우, 민간정원의 개방에 있어 정원 대상 등록 및 운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